

『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』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0년 10월 12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가. 2007년 1월 박물관 자료구입 시 유물의 매도희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서 첨부조항의 신설로 인하여 유물매도자로부터 불필요한 오해가 유발되고, 외부 감정위원의 섭외가 어려워지는 등 유물구입이 곤란해짐에 따라
- 나. 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유물구입 추진을 위해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심의회 기능 중에서 전시·수장유물과 구입유물의 감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,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가격을 신설함(안 제 18조)
- 나. 유물의 매도희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(안 제21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1일(목)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(참조 :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24, 팩스 032-440-8764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-주 소 -성 명 -연락처			

4. 참고자료

- 가.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.

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중 “박물관자료평가심의회”를 “심의회”로 한다.

제18조제1호중 “고증 및 감정에 관한 사항”을 “고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제3호와 제4호로 하며,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가격한 수목을 선별하여 재활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.

- ②유물은 박물관에서 평가대상 유물을 선정 한 후 심의회 위원들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7조(심의회 구성) ① 제12조제6항에 의한 <u>박물관자료평가심의회</u> 는 분야별로 3인 이상으로 하되, 5인 이내로 구성한다.	제17조(심의회 구성) ① ----- -- <u>심의회</u> ----- ----- ---
② ~ ③ (생략)	② ~ ③ (현행과 같음)
제18조(심의회 기능) (생략)	제18조(심의회 기능) (현행과 같음)
1. 전시·수장유물과 구입유물의 <u>고증</u> 및 감정에 관한 사항	1. ----- 고증
<신설>	2. <u>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가격</u>
2. <u>국내·외 경매 응찰 유물 선정에</u> 관한 사항	3. ----- -----
3. <u>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</u> 사항	4. ----- ---
제21조(자료구입) ① 시장은 박물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<u>범위 안에서</u>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	제21조(자료구입) ① ----- ----- ----- <u>범위</u> <u>에서</u> ----- ---
② <u>유물은 심의회 위원들의 감정을</u>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매도 희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<u>진·위 여부 및 시가감정서를</u> 발행할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	② <u>유물은 박물관에서 평가대상 유물을</u> 선정한 후 심의회 위원들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.

현행	개정안
③ 경매유물(해외경매를 포함한다)은 심의회의 실물평가 결과에 따라 관장이 응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 <u>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.</u> ④ (생략)	③ ----- ----- ----- <삭제> ④ (현행과 같음)

관련 법령 발췌 사항

관계 법령	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- 제12조(설립과 운영) ☐ 지방자치법 - 제22조(조례)
관련 법규 정비 대상	
관련 자료	

관계법령 발체사항

【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】

제12조(설립과 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·관리·보존·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【지방자치법】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